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안 행정예고 - 잠정조치 적용 연장 필요에 따른 부과기간 3개월 연장 -

기획재정부에서는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 적용기간 연장 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정 이유 및 법적 근거

-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에서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잠정조치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잠정조치의 적용)

-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②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④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2.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20호 (2022. 9. 14.)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부과 기간을 당초 2022.9.14. ~ 2023.1.13.에서 2023.1.14. ~ 2023.3.13.까지로 연장**

II. 부과 대상

1. 부과대상 공급국

-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

2. 부과대상 물품

- 연신가공된, 두께 25 μ m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 (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
(다만, 금속 등의 증착, 다른 필름 등과 합성된 제품은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관세품목분류번호: HSK 3920.92-0000

3.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중국	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이하 “더저우동홍”)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zhou Donghong Packing Material Co., Ltd. (이하 “창저우패킹”) - Can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이하 “창저우필름”) - Chongqing Mingzhu Plastic Co., Ltd. (이하 “충칭밍주”) - Cangzhou Mingzhu Plastic Co., Ltd. (이하 “창저우플라스틱”) 	5.18%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이하 “효성자싱”)과 그 관계사인 다음 목의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성화학주식회사 	5.08%
	그 밖의 공급자	5.12%
태국	A. J. Plast Public Co., Ltd. (이하 “에이제이피”)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4.81%
	그 밖의 공급자	
인도 네시아	PT. KOLON INA (이하 “코롱이나”)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6.71%
	그 밖의 공급자	

4. 부과기간

- (당초) 2022.9.14. - 2023.1.13. (4개월)
- (연장) [2023.1.14. - 2023.3.13. \(3개월 연장\)](#)

III. 의견 제출

1. 제출 기한

- 2023년 1월 5일

2. 기재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제출처

- 주소: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참조: 산업관세과장)
- 전화: 044-215-4432 / 팩스: 044-215-8076
- 이메일: stajr21@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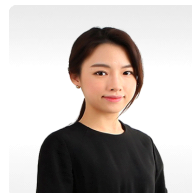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기재부고시)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 Contact



김동주 관세사
T 032-742-8250
E djkim@esein.co.kr



남근혜 컨설턴트
T 02-6011-3076
E khnam@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관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